

# 강원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입법 · 정책 동향

- ◇ 제288회 임시회(3. 17. ~ 3. 20.) 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목록과 의원발의 조례안(4건) 주요내용을 소개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billgangwon16.council.or.kr:8080>

## 제288회 임시회 의안(조례안) 처리 목록

❖ 조례안 : 11건(도지사 7, 의원 4 \* 제안자 구분)

위원회	의안(조례안)	대표발의자	본 회 의 처리결과 (2020. 3. 20.)
기획행정 위원회 (6)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조례안	박병구 의원	수정
사회문화 위원회 (1)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농림수산 위원회 (1)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위호진 의원	원안
경제건설 위원회 (2)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원태경 의원	수정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
교육 위원회 (1)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심영미 의원	수정

##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288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0. 3. 23.(월)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

## 제28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내용소개

###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 대표발의: 박병구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1)



강원도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 시책 수립, 건강장애 예방, 소방활동 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보건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보건안전시설 설치,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설치, 지역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 ▣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위호진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강릉4)
- 공동발의: 김진석 의원(농림수산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2)  
김수철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화천)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2)

강원도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초장 등의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조례안은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생태환경 개선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수산종자 방류사업, 인공어초 설치사업 등을 시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호진 의원



김진석 의원



김수철 의원



이종주 의원

## ▣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원태경 의원(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춘천3)
- 공동발의: 김수철 의원(경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화천)  
안미모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강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아동수당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금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이며, 국가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원태경 의원

김수철 의원

안미모 의원

## ▣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

- 대표발의: 심영미 의원(사회문화위원회·미래통합당·비례)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목표 수립, 학생 및 학부모 교육, 예방 교육 자료 제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관련 분야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